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구 천호동 410-100 일대를 대상지로 하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일반에 공람공고 하오니, 금번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공람기간: 2023. 7. 27. ~ 8. 9.(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53),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
3. 공람내용
 - 가. 정비사업 명칭: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 2) 면적: 17,394.2㎡
 - 다.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
 -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26, 9층(천호동, 씨티빌딩)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초)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변경)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마.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변경): 공람장소 비치

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7. 2. 22.

사. 건축계획 및 규모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용도	주택규모	비고
신청 내용	13,756.7㎡	60% 이하 (47.8466%)	793% 이하 (792.834%)	지하 6층 지상38층 (120m이하)	공동주택(670세대),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324실, 오피스 221실)	· 전용면적 40㎡초과 50㎡이하: 34세대 · 전용면적 50㎡초과 60㎡이하: 388세대 (분양 259세대, 임대 129세대)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248세대 (분양 206세대, 임대 42세대)	

아. 사업시행계획(변경) 주요내용

- 1)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2)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조합설립변경 인가 내용 반영)
- 3) 평면 등 조정 등으로 설계도서 변경
- 4) 건축관계자 변경(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소 변경 등) 등

자. 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라 강동구에 무상귀속)

:도로 2,503.5㎡, 공원 1,134㎡(변경없음)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 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 비치)

5. 의견서 제출방법: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표에 관련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공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 법령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의 비공개 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8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부동산정보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49
- 전자우편: cadastry@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

마. 문 의: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3425-621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공표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공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 상위 법령(부동산공시법)에서 회의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공표 규정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23. 7. 26. ~ 8. 16. (21일간)
-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공표) 삭제